

심성 인과와 인과적 배제*

이 선 형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심적인 것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과 구분되는(환원되지 않는)한 인과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김재권의 “인과적 배제(causal exclusion) 논변”이다. 그의 인과적 배제 논변은 물리주의의 틀 안에서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심적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력한 부수 현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됨으로써만 그 인과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심성 인과가 과연 우리의 직관에 합당한 심성 인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김재권의 논변을 약화하고 이에 따라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심적 속성의 인과적 지위를 살려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내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그의 논변이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과적 배제 원리(causal exclusion principle)”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인과적 배제 원리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리가 아니며, 오히려 그가 취하고 있는 특정하고 과중한 형이상학적 가정들 위에서만 따라 나올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I. 인과적 배제 문제

현대 “심성 인과(mental causation)”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논제들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 (1) [심성 인과가 존재한다]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과 인과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 (2) [속성 이원론]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과 구별된다(즉 환원 불가능하다).
- (3)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성] 물리계는 인과적으로 닫혀 있다.

(1)은 행위자이고 인식 주체로서의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가진 심적 특성은 물리 세계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한 물리 세계로부터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심성 인과가 있다는 믿음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철학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믿음으로 여겨진다. (2)는 데카르트적 실체 이원론과는 구별되는 현대 물리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이원론의 형태이다. 현대 물리주의는 세계가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존재자들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관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는 더 이상 데카르트적인, 즉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정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적인 “속성”과는 구별되는 심적 “속성”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입장이 바로 속성 이원론이다. 그러나 속성 이원론이 물리주의적 논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 이 글은 필자의 석사 논문, 「

서는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야 한다. 그것은 비물리적인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어떤 형태로든 “의존”-“수반”관계와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심적 속성을 포함한 비물리적인 속성은 물리적 기반 없이는 발생할 수 없으며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물리주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최소한의 이원론적 형태(속성이원론과 수반 논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입장)를 주장하는 입장을 “비환원적 물리주의”라 부른다.¹⁾ (3)은 물리주의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논제로서 물리계가 인과적으로 “자족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원인을 갖는 모든 물리적 사건은 반드시 물리적 원인을 가진다는 논제이다. 이것은 물리적 사건의 원인, 또는 인과적 설명을 찾기 위해 물리 영역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세 논제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3)에 따라 물리계가 인과적으로 자족적인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2)에 따라 물리적 속성과는 구별되는) 심적 속성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심적 속성은 인과적으로 무력한 부수 현상이 될 위협에 처하고 결과적으로 심성 인과가 존재한다는 사실((1)의 논제)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심성 인과 문제는 속성 이원론을 주장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성”과 마주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위와 같은 긴장이 완전하게 심적 속성을 부수 현상으로 빠뜨릴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물리계 폐쇄성에 대한 해석이 논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1) 원인을 갖는 모든 물리적 사건들은 오직 물리적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

(3.2) 원인을 갖는 모든 물리적 사건들은 하나의 물리적 원인을 갖는다.

(3.1)은 세계에 있는 모든 인과적 사슬이 물리적 사건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심적 원인은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이 인과적 사슬 안에 들어 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물리주의자가 반드시 (3.1)과 같은 강한 형태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보다 약한 형태인 (3.2)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물리주의가 받아들여야 할 폐쇄성 입론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물리적 원인이 적어도 하나 있거나 하다면 충분히 물리계의 자족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2) 하에서는 어떤 결과 사건에 물리적 원인이 있거나 하다면 그와 동시에 심적 원인이 존재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3)을 (3.2)로 받아들일 때 (1), (2), (3)사이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²⁾

이와 같은 고찰은 실제로 심성 인과 문제가 단지 물리주의적 제한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하게 한다. 즉 물리계 폐쇄성만으로는 심성 인과가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심성 인과 문제에 대한 김재권의 논변은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심적

1) 실제로 속성 이원론을 주장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아직까지 심리 철학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Putnam(1980), Fodor(1974) 등에 의해 제시된 다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한 심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논변, Chalmers(1996)는 중심으로 제시된 의식 문제와 관련된 논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 물리계 폐쇄성을 이렇게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이 가지는 의미를 지적한 논문은 McLaughlin(1989), Crisp and Warfield (forthcoming)

속성을 부수 현상으로 만드는 그의 논변은 물리주의의 가정과는 독립적인 다른 형이상학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떻게 동일한 사건이 두 개의 구별된 원인들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물리적 원인은 심적 원인을 ‘선취’, ‘배제’하려 들지 않을까?”³⁾ 즉 그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과 개념과 관련한 형이상학적 원리이다.⁴⁾

(4) [인과적 배제 원리] 만약 사건 **e**가 시간 **t**에 충분한 원인 **c**를 갖는다면, **c**와 구분되는 **t**의 어떠한 사건도 (이것이 진짜 인과적 중층 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e**의 원인일 수 없다.⁵⁾

이 원리에 따르면 원인을 갖는 어떠한 사건도 동시에 하나보다 많은 충분 원인을 가질 수 없다. 즉 결과 사건은 오직 하나의 충분 원인을 갖는다는 원리이다. 이제 이 논제가 더해지면 위의 네 가지 논제들**((1),(2),(3),(4))** 사이의 충돌은 후퇴할 여지없이 분명한 듯 보인다. 김재권의 이러한 인과적 배제 논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물리적 사건 **P***에는 심적 원인 **M**이 있다.
- (ii) 이때 심적 원인 **M**은 그것의 수반 토대 **P**를 가지며 이때 **P**는 **P***의 물리적 원인이다.
- (iii) [인과적 배제 원리에 의해] **M**또는 **P**중 하나가 (**P***의 원인으로)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 (iv) [물리적 인과적 폐쇄성에 의해] **P**가 남고 **M**은 배제된다.

이러한 인과적 배제 논변에서 심적 원인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심성 인과가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1)**이 지켜질 수 없다. 이러한 논변의 결론에 따라 김재권은 심성 인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위의 전제들 중 속성 이원론을 버리고 환원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위의 네 가지 입론들**((1), (2), (3), (4))**의 충돌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속성 이원론**(2)**의 포기이며,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됨으로써만 그 인과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논변은 실제로 속성 이원론을 주장하고 물리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심성 인과를 옹호하려고 하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김재권의 강력한 논변이 반드시 성공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내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이 논변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과적 배제 원리에 대한 의문이다. 인과적 배제 원리는 이 논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제로서 사용된다. 인과적 배제 원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심적 원인 **M**은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될 수 없으므로 인과적 배제 논변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적 배제 원리가 정말로 모든 경우에 다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글에서 인과적 배제 문제의 핵심적 근원에 있는 인과적 배제 원리가 모든 경우에 다 받아들여질

3) Kim(2000) 5.

4) 김재권은 심적 속성의 인과적 배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논변했는데, (Kim 1998) 1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명시적으로 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에서 이 원리의 명시적 가정 없이는 김재권의 논변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논변하였다. Kim(2000) 1서 보인 인과적 배제 논변의 () “ ” :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5) Kim(2000), p.14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오히려 그것은 김재권이 받아들이고 있는 특정한 형이상학적 가정들 위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II. 인과적 배제 원리

김재권은 인과적 배제 문제의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과적 배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다지 과중한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이 문제는 인과적 설명 그 자체와 나에게서 인과 관계에 대한 완벽하게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이해로부터 나오는 문제이다.”⁶⁾(강조는 필자가 함)

즉 인과적 배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형이상학적으로 특수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김재권은 “인과적 배제 원리”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논문에서 “인과적 배제 원리는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제약 조건이고, 나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배제 원리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한다.⁷⁾ 물론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적 배제 원리는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자격이 있음이 분명하다. 가령, 어떤 신학자가 내가 시험에 붙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내가 시험에 붙은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때 이 신학자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하나님이 어여뻐 여겨 하나님이 시험에 붙게 한 것이다”와 같은 추가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관적으로 비일관적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즉 하나의 사건에 독립적이고 충분한 두 원인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그럴 듯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주장하는 속성 이원론에 따르면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 즉 **P***에 주어진 두 원인 **P**와 **M**은 수반 관계에 있다. 이는 위와 같이 두 원인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두 원인이 수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두 원인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한다는 것을 포착해 준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인과적 배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즉 수반 관계는 두 원인 사이를 형이상학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줌으로써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반 인과”의 생각이다. 심적 사건은 그것이 물리적 사건에 수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심적 사건을 포함하는 인과 관계를 “수반 인과”라 부른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심성 인과는 이러한 형태의 것이고 김재권 자신도 한 때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 적이 있다.⁸⁾ 즉 수반할 경우에는 배제가 일어나

6) Kim(1998), pp.66-67.

7) Kim(2000), p.35.

8) 수반 인과에 대한 김재권의 입장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Kim(1983) . 김재권이 수반 인과를 받아들였을 때만

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수반 인과가 심성 인과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실재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 김재권은 더 이상 수반 인과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수반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인 한 여전히 배제는 발생한다는 강한 주장을 한다. 즉 김재권이 정식화 한 인과적 배제 원리(4)에 따르면 두 원인이 충분 원인인한 배제는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과적 배제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나는 김재권이 강한 의미의 인과적 배제 원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의 특정한 인과관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인과적 배제 원리는 그의 특정한 인과에 대한 입장을 전제했을 때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오히려 인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 인과에 대한 이론이 또 하나의 철학적 주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입장을 전제하고 논변하는 것은 분명 “과중한 형이상학”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나는 인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과적 배제 원리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III. 반사실문에 의한 인과 분석과 인과적 배제

불행히도 우리가 인과에 대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근래에 인과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인과 이론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데이빗 루이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반사실문에 의한 인과 분석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그 사건들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분석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건 **c**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건 **e**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c**가 **e**의 원인이다. 만일 이 이론이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인과에 대한 분석이라면, 우리가 이 이론이 평결하는 바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진다. 즉 인과에 대한 반사실문 의존 분석이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이론이고, 이 이론에 의해서 김재권이 “인과적 배제 원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만큼 증명의 부담은 김재권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재권은 이러한 인과관에 의해 인과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반사실적 이론가들이 해야 할 일은, 심성 인과를 위해 필요한 심 - 신 반사실문들을 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설명에 따를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반사실문들 - 예를 들어 부수현상적 반사실문들 - 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신 반사실문들이 외견상으로 참인 것처럼 보인다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심신 인과를 옹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철학적 임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그렇게 해봤자 심성 인과의 실재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단지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⁹⁾

해도 그는 인과적 배제 원리를 보다 약한 형태로 받아들였다. “ 어떤 사건도 두 개의 독립적인 원인을 가질 수 없다.” Kim (1989) . 이 원리에 따르면 두 원인이 수반 관계와 같은 비독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배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4)

9) Kim(1998), p.71.

가령, 철수가 맥주를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하자. 우리가 인과를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철수가 맥주를 원하지 않았더라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은 반사실문은 기꺼이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철수가 맥주를 원한 것이 냉장고 문을 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재권의 위와 같은 비판은 이런 방식으로 심성 인과를 옹호하려는 철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¹⁰ 김재권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논변의 문제점은 심신 반사실문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단지 심성 인과의 실재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사실문에 의해 심성 인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단지 반사실문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재권의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심신 반사실문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루이스의 반사실문 의미론 분석은 이런 요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루이스의 반사실문 의미론 분석에 따르면 반사실문 “ $P \square \rightarrow Q$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참이다. 즉, P 가 참인 세계들 중 우리 세계와 가장 유사한 가능세계에서 Q 도 참인 경우 “ $P \square \rightarrow Q$ ”는 참이다. 그리고 루이스에 의하면 반사실문 “ $\neg A \square \rightarrow \neg B$ ”가 참인 경우에, A 가 B 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반사실문의 진리치를 인과에 대한 직관과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반사실문을 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김재권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김재권이 요구했듯이, 루이스의 반사실문 의미론 분석에 의한 인과 관계 분석은 우리가 부수 현상론이라고 마땅히 평결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결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되어왔다.¹²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반사실문 의미론 분석을 받아들임으로써 김재권이 제기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루이스가 제시하는 반사실문 의미론 분석에 따라 반사실문 인과 분석이 인과적 배제에 대해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보임으로써 심성 인과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인과에 대한 반사실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판결한다. 즉 인과에 대한 반사실문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주장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것이다: (1) “그가 시험에 붙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2) “그가 시험에 붙은 것은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인과에 대한 반사실문 분석에 의하면 (2)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참이다: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시험에 떨어졌을 것이다. 가능세계와 유사성에 기초한 루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그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세계들 중 우리 세계와 가장 가까운 가능세계에서 그가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에 참이다. 그렇다면 동시에 (1)도 참일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우리의 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그는 시험에 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세계에서는 우리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시험에 붙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1)과 (2)는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배제된다.

반면에 심신 인과와 같이 심-신 사이에 수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10) 실제로 많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심성 인과를 옹호하고 있는데 특히 김재권은 Burge(1993), Baker(1993), Horgan(1997) . Kim(1998), pp.67-72

11) Lewis(1973).

12) 가령 Lewis(1973), pp.170-172

않다. 어떤 두뇌 상태 **P**가 행동 **P***를 야기하고, 심적 사건 **M**과 **P** 사이에 “충분히 강한” 수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심적 사건 **M** 역시 **P***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인과적 배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해선 루이스의 반사실문 의미론 분석에 따라 **M**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들 중 우리 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P***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첫 번째로 **M**이 발생하지 않은 세계들 중 **P**가 발생한 세계들과 그렇지 않은 세계들을 비교해보자. 이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P**가 발생하지 않은 세계가 우리 세계와 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M**이 발생하지 않은 세계에서 **P**가 발생한다면 이 세계는 명백히 수반을 어기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수반 관계가 논리적 수반이라면 이러한 세계들은 가능하지 조차 않다. 이 수반 관계가 논리적 수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까운” 또는 “충분히 강한” 관계에 놓여있다면, **M**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P**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 세계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탈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는 **M**과 **P**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세계들만 생각하면 된다.

이제 두 번째로 **M**과 **P**가 모두 발생하지 않은 세계들 중, **P***가 발생한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들을 비교해 보자. 우리는 이미 **P**가 **P***의 원인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와 유사한 어떤 세계에서 **M**과 **P**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P***가 발생했다면, 이 세계에는 **P***의 대안적인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P***에 대한 대안적인 원인—이를 **P'**이라 하자—을 상정하는 세계는 우리 세계와 상당한 이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는 없는 **P'**이 발생했다면, 이 세계에는 이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보면 결국에는 인과사의 엄청난 부분이 현실세계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M**과 **P**가 발생하지 않은 세계들 중, 다른 조건이 같다면, **P***도 발생하지 않은 세계가 우리 세계와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M**이 발생하지 않은 세계들 중 **P***가 발생하지 않은 세계가 우리 세계와 가장 가깝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M**은 **P***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논변 자체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배후에 있는 직관은 아주 분명한 것이다. 상정된 두 가지 원인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워서,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기조차 힘든 경우—즉 유관한 모든 세계에서 두 원인이 함께 움직인다면— 그 중 하나가 배제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진짜 원인을 따라다니는 부수 현상조차도 원인으로 만들지 않을까?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논변은 실제로 부수 현상론자가 강한 형태의 수반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¹³⁾ 이상이 보인 결론은 반사실문에 의한 인과 분석이 강한 의미의 인과적 배제 원리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V. 생성적(productive) 인과관

위에서 보인 인과에 대한 반사실문적 분석이 수반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인과적 배제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생각할 때, 김재권이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분 분석 일반을

13) 실제로 의식에 대해 부수현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적 수반 관계보다 약한 수반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Chalmers(1996)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재권이 어떤 근거에서 반사실적 인과 개념을 거부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인과관을 거부한다면 그는 어떠한 인과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그의 인과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나는 이 절에서 김재권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과관, 즉 강한 의미의 인과적 배제 원리를 함축한다고 생각되는 인과에 대한 그의 입장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겠다.

김재권은 인과를 일종의 “발생(**generation**)”이나 “생성(**production**)”과 같은 어떤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¹⁴ 이러한 인과 개념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원인 사건이 결과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도출하는 “힘(**power**)”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과 개념은 인과 자체를 다른 개념으로 –예를 들어 법칙이나 반사실문 등으로– 환원되거나 분석될 수 없는, 원초적(**primitive**)이거나 혹은 맹목적인(**brute**)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견해에서 인과가 원초적이고 맹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철학적인 언어로 그 입장을 진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에서도 잘 반영된다. 인과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앤스컴(**Elisabeth Anscombe**)은 이러한 인과 개념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가령, 앤스컴은 인과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parenthood**)라든지 “움직임”(**travel**), “원천”(**source**)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¹⁵ 나는 이러한 인과에 대한 입장을 “생성적(**productive**) 인과관”이라고 부르겠다. 실제로 김재권이 인과적 배제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인과관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인과적 배제 문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인 것이 모든 ‘일을 한다’면 어떻게 심적인 것이 기여할 ‘일’이 남아있겠는가?”¹⁶ 이러한 문장에서 “일을 한다”는 표현은 원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결과에 “힘을 가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아래 인과적 배제 원리는 자연스럽게 함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재권에 의하면 이러한 생성적 인과관은 우리가 인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직관적 이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선-이론적인 인과에 대한 직관이 이러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흄의 전통을 따라 인과를 다른 개념으로 환원, 분석하려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통 인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재권이 인과적 배제 문제가 “인과 관계에 대한 완전히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이해”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 개념이 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생성적 인과관이 직관적이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논변을 보자.

우리는 “생성적 인과관” 하에서는 한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직관은 원인이 결과에 힘을 미치는 것이 에너지가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이동해 가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에너지 전이가 이러한 직관을 잘 반영하는 모델이 된다고 해보자. 이러한 그림 하에서 인과 관계는 원인 사건부터 결과 사건까지 에너지가 이동(**transfer**)해 가는 것과 비슷한 작용일

14) 김재권은 서울대학교 강의(2000) . 귀옥이 그는 이러한 인과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좋은 논변() - 제시하는데 나는 석사 논문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제시했다. pp.70-74

15) Anscombe(1971), p.92.

16) Kim(1993b), p.361.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동”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원인 사건부터 결과 사건까지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실제로 동일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논변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원인사건부터 결과사건까지 인과 관계가 있어서 동일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논점 선취의 오류이다. 즉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시 인과 개념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논변은 실패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원인 사건부터 결과 사건까지 동일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엔스콧이 생성적 인과관을 주장할 때, 그는 실제로 인과 관계 자체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관찰이 가능한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 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시점에서의 에너지들 뿐이다. 그러므로 그 에너지들이 동일한 에너지들인지는 관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논변 역시 실패한다. 따라서 우리는 원인 사건부터 결과 사건까지 동일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 해주는 방법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고찰은 결국 생성적 인과관을 에너지 전이와 같은 것에 빗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버틀란트 러셀(Bertrand Russel)은 이러한 생성적 인과관이 정당화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인과관은 “마치 균주제와 같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잘못 가정되었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다.”¹⁷⁾

생성적 인과관에 대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생성적 인과관을 정신의 “의지력”(will power)과 같은 것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¹⁸⁾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위자(agent)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의지”가 힘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해에 의해 인과에 대한 생성적 직관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의지력과 같은 정신 인과를 통해서만 인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인과관을 통해서 정신이 부수현상임을 주장하는 모든 논변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모든 인과의 모델로 삼았던 심성 인과를 부정함으로써, 인과 자체도 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V. 사건,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틀과 인과적 배제

나는 마지막으로 생성적 인과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김재권이 원하는 바의 심적 속성의 인과적 배제가 따라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이제 “생성적 인과관”을 그럴듯한 인과의 대한 견해라고 가정해보자. 이 인과론을 따른다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했다는 것은 원인 사건 **c**가 가진 “힘”이 결과 사건 **e**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인과가 이런 것이라면, **c**가 가진 인과적 “힘”과 구별되는 어떤 또 다른 “힘”이 동시에 **e**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건 **c**가 가진 “힘”이 **e**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재권이 표현했던 것 같이, **c**가 모든 할 “일”을 다한다면, 어떤 다른 할 “일”이 남아 있겠는가?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¹⁷⁾ Russell(1912), p.173.

¹⁸⁾ 예를 들어 Lachs(1963)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해보자.

(I) [“인과적 힘”의 배제 원리] 시간 t 에 어떤 “인과적 힘”이 작용해서 사건 e 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이것과 구분되는 t 의 어떠한 “인과적 힘”도 (이것이 진짜 중층 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e 를 일으키는데 작용할 수 없다.

이제 이 결론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이 원리로부터 우리가 인과적 배제 원리를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인과 관계의 상관자(**relata**)가 “사건”이라는 것은 잘 받아들여진 입론이다.¹⁹ 그렇다면 (I)에서 말한 “인과적 힘”을 갖는 대상은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I), 즉 “인과적 힘”의 배제 원리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과적 배제 원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인과적 배제 원리] 만약 사건 e 가 시간 t 에 충분한 원인 c 를 갖는다면, c 와 구분되는 t 의 어떤 사건도 (이것이 진짜 중층 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e 의 원인일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재권이 실제로 인과적 배제 원리를 통해서 배제하는 것은 심적 “사건”이 아니라 심적 “속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건에 대한 배제 원리로부터 심적인 속성의 배제의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은 김재권이 사건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권에 따르면 사건은 한 대상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속성을 예화하는 것이다. 즉 속성은 대상, 시간과 함께 사건을 “구성”(constitute)한다.²⁰ 그런 의미에서 사건은 속성에 의해서 개별화되며, 하나의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의 속성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배제는 결국 속성에 대한 배제로 이끌 수 있다. 이제 김재권이 말한 의미에서의 사건이 속성 예화임을 부각시켜서 김재권의 인과적 배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I*) [인과적 배제 원리]: 만약 속성 P 의 예화가 시간 t 에 사건 e 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라면, P 와 구분되는 t 의 어떤 속성의 예화도 (이것이 진짜 중층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e 의 원인일 수 없다.

즉 (II*)는 (II)에서의 “사건”을 “속성 예화”로 대체한 결과이다. 이제 (II*)가 참이라면 심적 속성이 배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한다면 김재권에게 있어서 (II)는 (II*)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취하는 속성-예화 사건론 안에서 당연하게 함축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모든 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아니다. 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입장인 데이빗슨의 사건론에 따르면 사건은 내적인 구조를 갖지 않는 개별자이다.²¹ 이러한 사건론에서는 속성은 어떤 의미에서도 사건을 구성하지 않으며, 속성이란 사건이 표상되는 방식으로 사건에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그것을 표상하는 방식에 따라 혹은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질 수 있

19) Kim(1973), Davidson(1967).

20) Kim(1976), “trope”. Kim(1998), p.121 7

21) Davidson(1970).

다. 이제 이러한 사건론 안에서는 (II)가 (II*)를 함축하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II)가 (II*)를 함축하려면 사건에 대한 속성-예화 이론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데이빗슨적 사건은 속성의 예화가 아닌 구체적인 개별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속성은 단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표상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성적 인과관이 (II)를 따라나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데이빗슨적 사건론을 받아들인다면 (II*)의 인과적 배제 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빗슨적 사건론 안에서 (II)는 김재권이 의도하는 바의 결론, 즉 속성 배제를 이끄는 (II*)를 함축하지 않는다. 이제 김재권이 의도하는 인과적 배제 원리 (II*)는 그가 취하는 특정한 사건론 안에서만 따라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실제로 또 하나의 “과중한 형이상학적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현대 심성 인과 문제는 심성 “속성”의 인과적 지위를 살리는 문제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김재권의 속성-예화 사건론을 받아들일 때 속성은 자연스럽게 인과 관계의 항에 존재론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그의 존재론적 체계 안에서 속성의 인과적 지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빗슨적인 사건론을 받아들인다면 속성은 인과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과 관계의 항이 사건들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속성의 예화가 아닌 구체적인 개별자라면 인과와 관련하여 속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데이빗슨적 사건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속성을 인과적 설명의 관점에서 유관하게 만든다. 즉 속성은 인과 자체에서 존재론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적 차원, 인식적 차원에서 인과적으로 유관해진다는 것이다.²²⁾ 물론 김재권은 심적 속성의 인과적 지위 문제를 이와 같이 인과적 “설명”의 문제로 바꾸어 해결하려는 것은 심각한 존재론적 문제 상황을 인식론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²³⁾ 그러나 데이빗슨적 사건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에게 이러한 비판 또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본다. 만일 실제로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구조가 없는 개별적인 사건들이고 따라서 우리가 탐구할 형이상학적 대상이 이러한 개별자로서의 사건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인과적 설명과 관련하여 심적 “속성”의 인과적 유관성을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과적 유관성은 김재권이 바라는 속성의 존재론적인 함축을 갖지 않으므로 강한 의미에서의 인과적 효력을 포착해 주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이 심적인 것에 대한 비실재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데이빗슨적 틀 안에서도 여전히 심적인 것은 있다. 즉 심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 이르러 논쟁이 막다른 지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결국에 심성 인과와 인과적 배제 문제는 사건과 속성에 대해 어떤 존재론적 입장을 취하는냐에 따라 그 양상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V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가 맞다면 심성 인과 문제는 우리가 인과, 사건, 속성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틀을 받아들일느냐의 문제로 귀착되는 듯하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틀이라는 것이 우

22) 이러한 논의는 주로 데이빗슨적 심성 인과 문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공간의 제약상 많은 논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1, 3

23) Kim(1998), 3 .

리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김재권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심장하다.

“나는 이제 존재론적 틀이 대체로 선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의 존재론의 선택을 지배하는 주된 고려 사항들은 효용성이나 단순성 우아함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실체와 속성들을 넘어서서) 사건들이 있는가” 또는 실체가 사건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적인가”, 사건의 “형이상학적 본성”이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들에 관해서 어떤 “참”인 대답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 방향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존재론적 탐구의 핵심이 기술(description)보다는 구성(construction)에 있다고 생각한다.”²⁴⁾

이러한 김재권의 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김재권의 존재론적 틀이나 형이상학적 입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선택함으로써 심성 인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비록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심적 속성의 인과적 지위가 “행위자”로서의 의지력을 가진 강한 의미에서의 심성 인과의 직관을 살리는 데는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최소한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된 것으로서 살리는 심성 인과의 모습보다는 나은 것이 아닐까.

24) Kim(1993a), p. ix.

참고문헌

- Anscombe, G. E. M.(1971), "Causality and Determination", reprinted in Sosa, E. and M. Tooley, eds., *Cau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aker, Lynne Rudder.(1993), "Metaphysics and Mental Causation", in Heil and Mele eds.(1993)
- Burge, Tyler.(1993), "Mind- Body Causation and Explanatory Practice", in Heil and Mele eds.(1993)
- Chalmers, David J.(1996), *The Conscious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isp, Tom and Ted Warfield (forthcoming) Kims Master Argument: A Critical Notice of *Mind in a Physical World*, forthcoming in *Nous*.
- Davidson, Donald.(1967), "Causal Relations", *Journal of Philosophy* 64: 691- 703, reprinted in Davidson, D.,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0), "Mental Events", reprinted in Davidson, D.,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dor, Jerry A.(1974), "Special Sciences, or the Disunity of Science as a Working Hypothesis", *Synthese* 28: 97- 115, reprinted in Block, N. ed.,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 Heil, John and Alfred Mele eds.(1993), *Mental Caus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rgan, Terence.(1997), "Kim on Mental Causation and Causal Exclus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11: 165- 184.
- Kim, Jaegwon.(1973), "Causation, Nomic Subsumption, and the Concept of Event", reprinted in Kim(1993a).
- _____ (1976), "Events as Property Exemplification", reprinted in Kim (1993a).
- _____ (1983), "Supervenience and Supervenient"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2, suppl.: 45- 56.
- _____ (1989), "Mechanism, Purpose, and Explanatory Exclusion", reprinted in Kim(1993a).
- _____ (1993a), *Supervenience and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b), "Postscripts on Mental Causation", in Kim (1993a).
- _____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2000), *Taking Physicalism to the limits*.
- Lachs, John.(1963), "Epiphenomenalism and the Notion of Cause", *The Journal of Philosophy* 60: 141- 146.
- Lewis, David. K.(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556- 567, reprinted in *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McLaughlin, Brian.(1989), "Type Epiphenomenalism, Type Dualism, and the Causal Priority of the Physical", *Philosophical Perspectives* 3: 109- 135.**
- Putnam, Hilary.(1980), "The Nature of Mental States", in Ned Block (ed.)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land.(1912), "On the Notion of Caus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3: 1-26, reprinted in Russell, B., *Mysticism and Logic*, London: Routledge.**